

2015년 1월 1일 부터 한돈자조금 1,100원 거출!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바랍니다

한돈자조금 거출금액이

『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』 제18조의 규정에 의거
2015년 1월 1일부터 돼지 1두당 1,100원으로 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
양돈 선진국과의 FTA 체결 추진 등 급변하는 세계 소비시장 속에서
우리 스스로 양돈산업을 지키고, 개방경제 하에서
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한돈자조금을 인상하기로 하였으니
전국 한돈농가 및 유통 관계자 여러분께서는
적극적으로 동참하고,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



01 의무거출금 징수

- 징수개시일 : 2015년 1월 1일
- 징수대상 및 금액 : 도축장에서 등급판정을 받은 돼지 1두당 1,100원
※ 농가 등으로부터 거출된 금액에 상응한 자금을 정부에서 지원합니다.
- 수납기관 : 전국 도축장 대표자

02 자금용도

- 한돈 소비촉진 및 소비확대를 위한 홍보, 유통구조 개선, 한돈 농가와 소비자 대상 교육 및 정보 제공, 조사 연구, 수급 안정, 신규사업 개발 등

03 당부말씀

- 한돈농가 여러분께서는 중도매인 또는 식육판매업자 등과 협의하여 한돈자조금 거출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.
- 도축장 대표자 및 관계자께서는 출하업체(도축 우편자)와 협의하여 한돈농수가 납부한 의무거출금이 차질없이 납입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고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[한돈자조금사무국 ☎\(02\)6486-2901](#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“한돈인들의 종자돈으로 양돈산업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 갑니다!!”



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

KOREA PORK BOARD